

제4장 자살 관련 보도



제4장 자살 관련 보도

사례 10

의결번호	제2015-43호
매 체 명	고성인터넷뉴스
보도일시 및 위치	2015년 2월 4일자 고성뉴스면
기사제목	고성경찰, 자살 기도자 구조

1. 보도내용

「고성경찰, 자살 기도자 구조」 제하의 사진

「고성경찰서 ○○파출소에서는 2월 3일 오후 1시경, ○○면 ○○리 ○○빌라 2층 자택 내에서 신병을 비관 자살을 기도한 백○○ 씨(48·남)를 뛰어남 사건 대처로 설득 끝에 구조하고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계했다. (이하 생략)」

2. 권고사항

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,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권고이유

위 기사는 자살기도자의 성, 나이, 자택주소, 초상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.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기도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다.

따라서 위 기사는 「시정권고심의회기준」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.

사례 11

의결번호	제2015-206호
매 체 명	휴먼누리
보도일시 및 위치	2015년 5월 13일자 사건사고면
기사제목	○○동 ○○○○ 일가족 5명 변사사건

1. 보도내용

「○○동 ○○○○ 일가족 5명 변사사건」 제하의 사진

2. 권고사항

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,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권고이유

위 기사는 일가족 변사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유서 전문, 자살자 가족의 성명, 나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개하여 자살자와 그 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.

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다.

따라서 위 기사는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.

해운대 모텔에서 일가족 5명 변사사건

등록일자 [2015년05월13일 11시33분]



일가족 5명 변사사건

□ 사건개요

◦ '15. 5. 13. 07:02경 해운대구 모텔부 모텔부 모텔부 모텔부 모텔부 앞에서 신변을 비판하여 부모와 누나, 조카를 목 둘라 살해하고 뛰어내려 사망한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, 신고한 것임.

□ 관련자 인적사항

◦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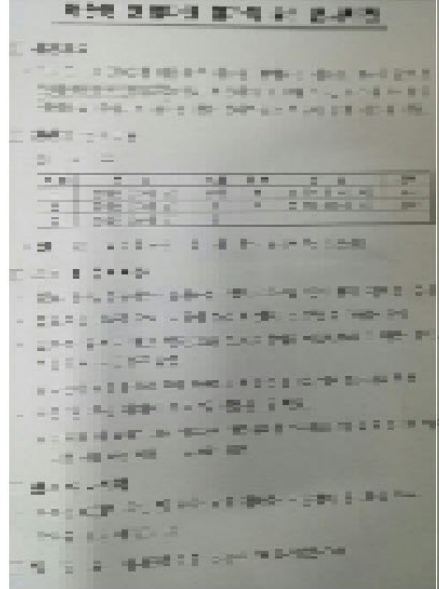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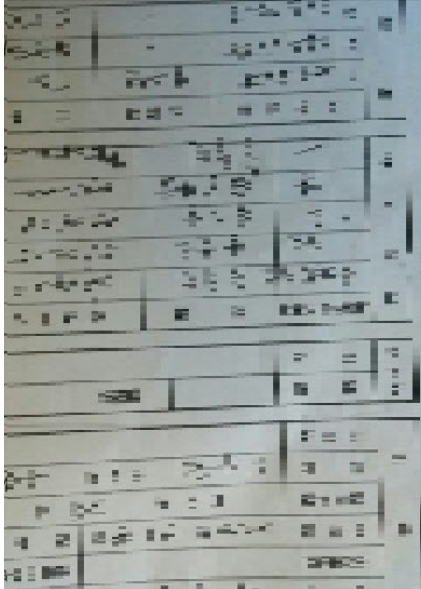
변 사 자

연 번	성 명	관 계	연 번	성 명	관 계
1	송00 (37세, 남)	본인	4	송00 (41세, 여)	누나
2	송00 (67세, 남)	부	5	정00 (8세, 남)	조카
3	양00 (64세, 여)	모			

◦ 신고 자 : 회사원 김 00 - 관리사무소 보안실장

□ 조치 및 수사사항

- 신고 접수, 경찰서장·형사과장·당직·과수팀 현장 출동, 감식등 수사
- 신고자는 모텔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신고한 것이라는 진술
- 변사자 주머니 메모를 발견하고 현장 확인, 거실에서 시신 4구 발견
 - ※ 나란히 누운 상태로 특이 이상없고 목 둘린 흔적이 있어 질식사료 추정
- 작은 방 책상 위에서 유서 및 신분증 등 발견
 - ※ '가족들 다 보내고 제가 떨어져서 발견되어야 가족들을 수습할 수 있기에 뛰어 내립니다' 라는 내용 - A4 4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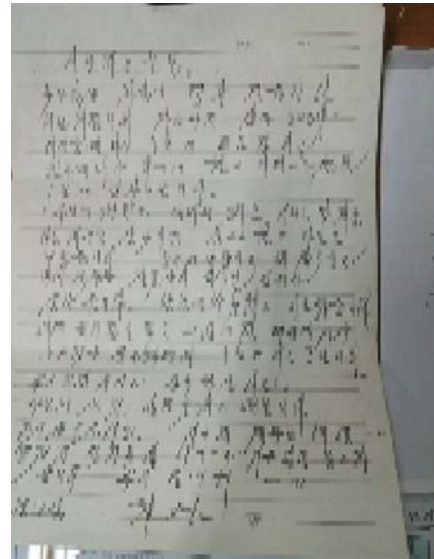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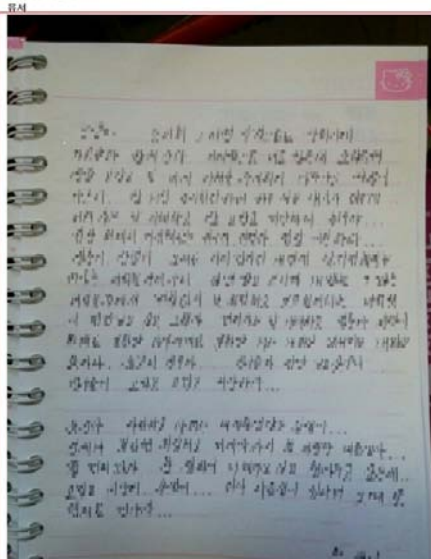


분량

□ 향후 수사계획

- 아파트 CCTV 확인 및 유족 상대 정확한 사망경위 등 계속 수사
- 국과수 부검 예정(5. 14)

형사과 / 해운대



사례 12

의결번호	제2015-227호
매 체 명	조선일보
보도일시 및 위치	2015년 6월 16일자 사회A13면
기사제목	20代 남성의 ○○○ 증독死... 비밀은 ‘갈색병’

1. 보도내용

「(전략) 숨진 A 씨는 키 185cm, 몸무게 116kg의 건장한 체격으로 지병도 없었다. 부검 결과 사인(死因)이 될 만한 내상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. 그의 사망 원인을 추정해볼 수 있는 단서는 위장과 혈액, 간 등에서 검출된 ○○○ 성분. A 씨의 혈중 ○○○ 농도는 L당 ○○○mg에 달했다. 혈중 ○○○ 농도가 L당 ○○○mg 이하일 때 안전한 수준이고 ○○○mg 이상이면 치사량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A 씨는 치사량의 ○배 가까운 ○○○에 중독됐던 셈이다. A 씨의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작은 갈색 유리병과 컵에서도 국과수 감식 결과 ○○○ 성분이 검출됐다. A 씨가 죽기 한 달 전 친구들에게 “해외에서 산 약이 있는데 사람을 아주 빨리 죽일 수 있다”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. 국과수는 “A 씨가 병에 담긴 액상 ○○○을 마시고 증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”는 결론을 내렸다. (이하 생략)」

2. 권고사항

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권고이유

위 기사는 자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.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자살을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.

따라서 위 기사는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.

사례 13

의결번호	제2015-269호
매 체 명	인터넷 씨티21뉴스
보도일시 및 위치	2015년 7월 16일자 사회면
기사제목	○○ ○○읍 7급 공무원 아파트 투신 자살

1. 보도내용

「(전략) ○○시 ○○읍사무소 직원 A 씨(40·남)가 자신의 거주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.

경찰과 시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오전 7시 30분께 ○○동 B아파트 옥상에서 지면으로 떨어졌다. 경찰은 A 씨가 직접 옥상으로 올라간 점을 들어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.

미혼인 ○급 공무원 A 씨는 ○○읍사무소 ○○계에서 ○○보전, ○○관리,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했다고 다른 면사무소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봐왔다. (중략)

한 공무원은 “아버지가 ○○ ○○ 정년을 마쳤고 부모님이 서울 ○○에 살고 있다. 집과 시골에 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”며 금전 문제 가능성을 낮게 봤다. 하지만 다른 공무원은 “아파트 관리비가 몇 달 째 밀려 있었다는데 공무원들은 보통 공과금 납부 날짜를 정확히 지키는 편”이라며 달리 봤다.

또 다른 공무원은 “업무적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”이라며 “저 번에도 (A 씨가) ‘규정에 맞지 않아 ○○전용을 거부했더니 민원인들이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 압박한다’는 말을 했다”고 주장했다. 민원 성격의 ○○ 업무를 오래 보면서 스트레스가 컸다는 것.(이하 생략)」

2. 권고사항

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,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권고이유

위 기사는 자살자의 직업, 근무지, 담당 업무, 부모님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

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추정하였다.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.

따라서 위 기사는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.

사례 14

의결번호	제2015-330호
매 체 명	매경닷컴
보도일시 및 위치	2015년 9월 21일자 사회면
기사제목	여의도 ○○○○○증권 건물서 30대 여직원 투신

1. 보도내용

「(전략)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○○○○○증권 건물 15층에서 물류회사인 ○○○○○ 직원 신모 씨(39·여)가 투신했다. 신 씨는 투신 직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. (이하 생략)」

2. 권고사항

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,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권고이유

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외에 직업, 근무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.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.

따라서 위 기사는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.